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목 차>

1. 학생연구자의 범위
2.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대상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작 성 자	이름	정구봉
	담당부서 (과)	산재보상정책과		직급	행정주사보
	국장 ^代	김규석		연락처	044-202-8838
	과장	오태웅		이메일	050006033@mail.go.kr

2021. 08. 27.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학생연구자의 범위								
	2.규제조문	제 121조의2								
	3.위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9.10 ~ 2021.10.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R&D분야 투자 확대, 기술발전, 융·복합 연구 활성화 등 연구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연구실 안전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 ○ 특히, 다양한 실험·실습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대학 연구실에서 안전사고 발생비율이 높으며, 사고 규모도 대형화 추세 ○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각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실 안전 공제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2월 발생한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턱 없이 부족 ○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를 계기로 학생연구자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국회·언론 요구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교육부·과기부) 및 이해당사자(대학원생 노조·대학교육 협의회)도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 ○ 이에 관계부처 합동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21.2.9)에서 학생연구자에 대해 산재보험 당연적용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4.13.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특례 적용 제도를 신설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22.1.1.시행) ○ 산재보험법은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 하되 구체적인 세부 적용대상 범위는 시행령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산재보험 적용대상 학생연구자 범위 명확히 할 필요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가 신설 되어 "학생연구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 해당 학생연구자 소속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산재보험료 부담 의무 발생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연구자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중인 대학 또는 연구기관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colspan="2">유 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대학 또는 연구기관</td> <td>387개소 * 산재보험 가입 대학교 현황</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대학 또는 연구기관	387개소 * 산재보험 가입 대학교 현황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대학 또는 연구기관	387개소 * 산재보험 가입 대학교 현황								
9.도입목표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연구자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함에 따라 연구활동 수행 중 재해를 									

	기대효과	입은 학생연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 제공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63,243.19		63,243.19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66,851.31	-66,851.31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63,243.19	0	7,992.59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21조의2(학생연구자의 범위) 법 제 1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란 연구 개발과제에 참여(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 · 학사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 · 학석사통합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통합과정(휴학생 및 수료생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경우</p> <p>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위 학위 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로서 졸업하기 전에 수행하던 연구개발과제를 상위 학위과정의 시작 전까지 계속 수행하는 경우</p>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 배경

- 국가 R&D분야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기관 내 연구시설 및 연구 활동 종사자 규모가 지속 증가

* 국가 R&D사업 예산: ('16.) 19.1조원 → ('20.) 24.2조원 → ('21.) 27.2조원

- R&D 기술발전, 융·복합 연구 활성화 등 연구환경도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연구실 안전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
- 특히, 다양한 실험·실습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대학 연구실에서 안전사고 발생비율이 높으며, 사고 규모도 대형화 추세

< 대학 연구실 대형사고 발생 사례 >



나. 정부개입 필요성

-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각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실 안전 공제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 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보상 한도액(5천만원)이 매우 낮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

* 경북대 화학관 폭발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후 1년간 치료비만 10억원 소요

-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를 계기로 학생연구자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국회·언론 등 요구 지속

- 관계부처(교육부·과기부) 및 이해당사자(대학원생 노조·대학교육협의회)도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

- 이에 관계부처 합동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21.2.9)에서 학생연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기로 결정
 - '21.4.13.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특례 적용 제도를 신설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22.1.1.시행)
- 산재보험법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되, 구체적인 세부 적용대상 범위는 시행령 위임
 - 이에 산재보험 적용대상 학생연구자 범위 명확화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미적용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안전보험으로 보호
	내용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이 아닌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민간보험으로 보호
규제대안1	대안명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내용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학생연구자(11만명)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규제대안2	대안명	학생연구자 중 대학원생만 산재보험 당연적용
	내용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중 대학원생(7.6만명)만 산재보험 적용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연구기관 등의 산재보험료 부담의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안전보험은 대부분의 대학이 최소한도만 가입(5천만원)하여 대형 사고 시 보상액 절대 부족 ○ 보상도 치료비에 집중되어 피해 학생 복귀를 위한 후속·재활 비용 전무

규제대안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연구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충분한 보상 가능 * 산재보험은 연금성, 충분한 보상, 무과실 보상인 특징인 반면 민간보험은 일회성, 낮은 보상, 휴업보상이 없거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연구기관 등의 산재보험료 부담 의무 발생
규제대안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연구기관 등의 산재보험료 부담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연구기관 등의 산재보험료 부담 의무 발생 ○ 학부생에 대한 보상 부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대학교육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종사자 범위가 넓어 산재 보험 적용범위 명확화 필요 ○ 대학 보험료 부담 최소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계 전체 대학(원)생 (104만명) 중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사람(11만명)으로 적용범위 명확화 ○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현행 최저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고 기준보수도 낮게 고시
대학원생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에 적극 찬성하며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라면 휴학 또는 수료 상태인 경우에도 적용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음
 - 이해당사자(대교협·대학원생노조 등)가 적극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및 관계부처(교육부·과기부)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
 - 아울러 '21.4.13.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은 확정된 사안인만큼 현재와 같이 학생연구자를 민간 보험으로 보호하는 현행 유지안은 채택 곤란
- 아울러 고용부-근로복지공단 공동 실태조사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대상을 명확히 설정하였음

* 일선 대학교, 대교협, 대학원생 노조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20.12.~'21.6)

-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전체 이공계 대학(원)생 중 실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학생 연구자(11만명)로 한정
- 현행 최저 산재보험요율을 적용(0.7%)하고 기준보수도 낮게 설정하여 대학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

3. 규제목표

- 근로자와 순수 학생 신분 사이에 놓여 있어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큼에도 사회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연구자에 대해 산재보험 혜택 제공
- 업무상 재해를 입은 학생연구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진단·치료 및 적절한 재활 지원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대학의 연구실 사고는 연간 100~2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 등 중대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단위: 건, 교수 등 산재보상 사고 제외)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고건수	97	104	158	127	99
중대사고*	1	1	0	1	0

*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급 해당하는 부상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 등(「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 '19.12월 발생한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와 같이 「연구실안전법」 상 연구실 안전 공제보험만으로는 치료비조차 총당 곤란

※ (경북대 사례) 중상 피해학생 치료비 보상한도(5천만원) 초과로 보험금 및 대학 자체예산으로 약 10억 원을 지급

- 산재보험은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 및 재활에 전념할 수 있으며 중증 장애 시에는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이 보장되는 등 연구실안전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월등히 높음
- 금번 개정안은 전체 이공계 학부 및 대학원생(104만명) 중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재해위험이 높은 학생연구자(11만명)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제공하되,
 - 대학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모든 학생에 대해 산재보험 당연적용
- 특히 독일의 경우, 1971.4.1.부터 시행된 '학생·대학생·유치원생 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법정 학생재해보험제도를 도입

○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63,243.19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3,243.19		63,243.1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66,851.31	-66,851.31
정부				
총 합계		63,243.19	66,851.31	-3,608.12
기업순비용		63,243.19	연간균등순비용	7,992.59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대학교육협의회 및 주요 대학 의견 수렴 결과 학생연구자의 산재 보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음
 - 다만 산재보험료 부담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 보호 필요성이 높은 학생연구자를 빠짐없이 보호하면서도 대학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학생연구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였음
 - 시행령에 따르면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약 11만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전체 이공계 학부·대학원생(111만명)에게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1/10로 절감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율은 현행 최저요율인 「연구 및 개발사업」요율(0.7%)이 적용되고, 기준보수도 최대한 낮게 책정
 - 이에 학생연구자의 月 보험료는 2,100원~8,750원에 불과하여 근로자 산재보험료(月 4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추가적으로 재해율이 낮은 대학의 경우 보험료 최대 20% 할인
 - '20년 기준 전체 대학교(387개소) 중 96.4%(373개소)가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고 있으며 최대 20% 할인받는 대학도 약 78.8%(305개소)
-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피규제자(대학)의 준수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산재보험은 다양한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를 폭 넓게 보호하고 있음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장실습생, 중소기업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 아울러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은 기존 산재보험 제도의 틀을 대부분 준용하여 운용할 예정이며 적용대상 범위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므로, 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의 행정상 집행 어려움은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료 수입을 토대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편성·조정 없이 집행 가능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관계부처 합동, '21.2.9)
-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21.4.13)
- 학생연구자 근로실태 조사 및 이행당사자 의견수렴 ('21.4~.6월)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일 이전) 대학교 등 적용 대상 제도 안내 등 집중 홍보
 - * 사업장 DM발송, 리플렛 제작·배포 등
- (시행일 이후) 매월 적용현황 모니터링 실시 등 지속 관리

3. 종합결론

- 연구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연구실 안전 위험성도 함께 증가
 - 특히, 다양한 실험·실습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대학 연구실에서 안전사고 발생비율이 높으며, 사고 규모도 대형화 추세
- 근로자와 순수 학생 신분 사이 중간적 지위에 놓여 있는 학생 연구자는 근로 여건 상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큼에도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

📁 **학생연구원 근로실태**

- 대부분의 이공계 대학원생은 1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참여하고 있으며 (평균 2.2개), 연구과제 투입시간도 주당 20~40시간 (60%)
- 이공계박사 졸업자 설문조사 : 연구개발활동 참여시간이 31.9%로 가장 높음 (교육과 학위논문 투입 시간은 합쳐서 22.5%)

○ 이에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산재보험 혜택을 제공하되

- 수입수준이 낮은 학생연구자의 특성, 대학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적용방안을 마련

○ 산재보험 적용대상 학생연구자 범위를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로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대학의 보험료 부담도 최소화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3,243.19		63,243.1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66,851.31	-66,851.31
정부				
총 합계		63,243.19	66,851.31	-3,608.12
기업순비용		63,243.19	연간균등순비용	7,992.59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대학 및 연구기관								
활동제목	산재보험료								
비용항목	기타								
비용	63,243,191,303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박사 연 보험료)+(석사 연 보험료)+(학사 연 보험료) 박사 보험료= 대상인원(33,000명) x 1인당 연간 보험료(105,000원) 석사 보험료= 대상인원(44,000명) x 1인당 연간 보험료(84,000원) 학사 보험료= 대상인원(33,000명) x 1인당 연간 보험료(25,200원) (3465000000+3696000000+831600000)								
근거설명	<p>○ 연구기관당 보험료 부담은 약 2,065만원 수준이고, 대부분의 대학교가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받고 있는 현황을 감안하면 실제 보험료 부담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p> <p>○ 학생연구자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5,905원 (학사2,100원/석사7,000원/박사8,750원)</p> <p>1) (대상인원)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보수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은 약 11만명으로 추정</p> <p>- 이들 보험료를 산재보험 가입 대학교(387개소)가 부담할 경우, 기관당 부담은 약 2,065만원 수준</p> <p>※ 최근 고3학생수 감소를 고려할 때, 향후 보험료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p>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head> <tr> <th>연도</th> <th>2019년 대입</th> <th>2020년 대입</th> <th>2021년 대입</th> </tr> </thead> <tbody> <tr> <td>고3 학생수</td> <td>57만명</td> <td>50만명</td> <td>43.7만명</td> </tr> </tbody> </table> <p>2) (대학부담 보험료) 월보험료 x 12개월 = (박사) 105,000원, (석사)84,000원, (학사) 25,200원</p> <p>- 월보험료</p> <p>① 박사과정 기준보수(125만원*) x 보험료율(0.7%**) = 8,750원</p> <p>② 석사과정 기준보수(100만원) x 보험료율(0.7%) = 7,000원</p> <p>③ 학사과정 기준보수(30만원) x 보험료율(0.7%) = 2,100원</p> <p>* 과기부 실태조사 결과 학생연구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박사과정 125만원, 석사과정 100만원, 학사과정 30만원 수준</p>	연도	2019년 대입	2020년 대입	2021년 대입	고3 학생수	57만명	50만명	43.7만명
연도	2019년 대입	2020년 대입	2021년 대입						
고3 학생수	57만명	50만명	43.7만명						

	<p>※ 기준보수는 '22.하반기 관계부처 협의 및 실태조사를 거쳐 고시 예정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보수가 달라질 수 있음</p> <p>** 보험료율: <90703 연구및개발사업> 보험료율 0.7%</p>
--	---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량)세분류	학생연구자
활동제목	재해발생시 산재보험 혜택
편익항목	산재보험급여(연금포함)
편익	66,851,311,664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1인당\ 보험급여 * 보험급여수급자수) + (1인당\ 장해연금부채 * 연금수급자수(현가환산액)) + (1인당\ 유족연금부채 * 연금수급자수(현가환산액))$ $((17269000 * 110) + (777000000 * 7) + (370000000 * 3))$
근거설명	<p>1) (대상인원)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보수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수(11만명)</p> <p>2) (수급자비율) 연구및개발사업 재해율: 0.1%</p> <p>3) (보험급여) 연구및개발사업 1인당 평균 보험급여 지급액 17,269,000원*</p> <p>4) (연금부채) 장해연금: 수급자수 7명 예상(필요급여액 148.5억원, 현가환산액 54억원), 유족연금: 수급자수 3명 예상(필요급여액 19.5억원, 현가환산액 11억원)</p> <p>*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중 학생연구자 적용 업종인 연구 및 개발사업 '19년 재해율(출처:근로복지공단)</p> <p>** '19년 기준 연구및개발사업 1인당 평균 보험급여 지급액(출처:근로복지공단)</p> <p>*** 전체급여 수급자 중 장해연금 수급자비율(19.95%), 유족연금 수급자수 비율(9.28% 적용) → '20년 업종별 재해율 0.57%이고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서비스업 재해율 0.19이므로 전체 비율 대비 1/3로 적용</p>

(정성)세분류	산재보험 적용대상 학생연구자
활동제목	사회안전망강화
편익항목	치료, 재활 등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산재보험법 상 학생연구자가 연구활동 중 다친 경우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
 - 산재보험급여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산재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 휴업급여, 장애가 남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사망할 경우 그 가족에게 유족연금, 장례비 등이 지급되어
 - 취약노동자들을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
- 또한, 산재보험은 재활치료, 직업재활훈련 등 직장복귀를 지원해 주므로 노동자의 빠르고 건강한 일터복귀를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 함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내에서 요양비 전액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상당액
- **상해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 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 지급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장애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 **장 의 비** : 장제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대상		
	2.규제조문	제71조의2 제1항		
	3.위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9.10 ~ 2021.10.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가 있으며, 부상당한 근로자가 회복 후 원 사업장에 원활히 복귀하도록 산재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의 권리보장이 필요 ○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소속 근로자가 원활히 사고전 원래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자이며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복귀 계획서 제출은 산재보상법 제1조 재해근로자의 재할 및 사회복귀 촉진을 가능하도록 하는 산재보상법의 목적과도 일치 ○ 신설된 산재법의 직장복귀 지원은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산재보험법에 의해 요양하고 있는 동안 사업주는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 제출된 계획서를 통해 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복귀시키는데 필요한 애로사항을 파악,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됨 ○ 대상은 산업재해로 장해가 예상되거나 6개월이상 장기요양으로 원직장 복귀를 희망(원직복귀가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 등 제외) 하는 취약조건의 산재근로자들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발생하는 산재승인자 9만여명(2017년~2019년 3년 평균 값) 중 추정되는 대상규모는 연 20,492명으로 이들 취약산재노동자의 사업주가 신규법령의 행정대상(제출대상)이 됨 ○ 신설 법안은 산업재해로 장해가 예상되는 취약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조치이며, 이들의 조속한 직장복귀 과정에 소속 사업주의 참여를 유도하여 소속 근로자의 복귀이행을 통한 조속한 직업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행정대상인 사업주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 요구사항을 조속히 파악, 제도적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 목적과 수단의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7.규제내용	○ 제71조의2,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자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또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요양이 예상되는 자에 대한 직장 복귀계획서 제출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산재근로자를 산재발생 당시 직장으로 복귀시켜야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주</td> <td>20,492명(추정규모) 재해종사자의 사업주</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주	20,492명(추정규모) 재해종사자의 사업주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주	20,492명(추정규모) 재해종사자의 사업주								
	9.규제목표	○ 산업재해로 산재근로자의 보호 및 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 직장 복귀를 준비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업주가 필요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으로 연계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 직장복귀를 도모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규제의 적정성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율 정체, 이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및 정부개입을 통한 산재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신장 및 권리보장 필요 * (원직복귀율) ('17) 41.6% → ('18) 42.5% → ('19) 43.4% → ('20) 44.4 %								
기타	12. 일 물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71조의2(직장복귀계획서 제출 기준 등)</p> <p>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애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p> <p>2.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요양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p> <p>3. 그 밖에 공단이 1호와 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율 정체, 이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및 정부개입을 통한 산재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신장 및 권리 보장 필요

* (원직복귀율) ('17) 41.6% → ('18) 42.5% → ('19) 43.4% → ('20) 44.4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규제대안	대안명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대상
	내용	○ 산업재해로 신체장해가 예상되고 6개월이상 장기 요양으로 인하여 원직장 복귀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기본대상으로 하고 그의 사업주에게 직장 복귀 계획서 제출 요구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후 2만명의 취약근로자만으로 대상을 한정,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에 관한 기본권리 보호, 기본적 사회 안전망 마련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작성으로 노동시장 조속한 복귀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의무 발생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의무는 규정하였으나, 직장복귀계획서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규제가 아닌 지원제도로서의 운영, 비용부담의 완화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또는 벌칙 조항은 미포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사업주 (제조업 및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노동자의 복귀 의지가 강하고 정부 지원이 있을 경우 대다수(86%)의 사업주는 원직복귀 시킬 의사가 있음. - 현행 제도하에 사업주는 요양 중인 산재노동 	○ 원직복귀 지원 제도 도입

	<p>자의 치료기간, 치료과정, 장애정도, 회복예상기간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지 못하였다고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와 산재노동자 사이의 다툼 방지를 위한 제도, 산재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원직복귀 지원제도 도입 필요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필요 -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해 직장복귀 계획수립, 전문재활서비스 제공, 작업능력 평가,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을 거쳐 직장복귀 소견서 제공 필요 - 장애예상자가 요양 초기부터 재활 특별진찰을 통하여 전문재활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편 필요 - 병원-공단 간 연계 및 협조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직복귀 지원제도 도입 및 병원재활치료 연계

3. 규제목표

- 사업주가 소속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 계획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산재노동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유도**
 - 산재발생 사업장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 의지 확인
 - 근로자의 원직 복귀에 필요한 사업주의 애로사항 조기 파악
 - 정부의 사업주지원제도 연계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 복귀 이행을 지원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재해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조력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 근로자의 직장복귀 이행 준비가 필요
 - 장애잔존이 예상되는 소속 산재근로자를 직장복귀 시키기 위하여 사업주도 복귀를 위한 이행 준비가 필요
- ※ 산업재해로 후천적 장애 잔존이 예상되고 요양기간이 6개월이상 장기화는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를 어렵게 하는 요인임

- 사업주가 제출하는 직장복귀 계획서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목적)를 촉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에 해당함
-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에게 계획서 제출의 요구 및 적용은 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독일) 사회법전 제9권(장애인재활법)에 사업장 복귀관리 규정: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재해 등으로 6주 이상 결근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 복귀관리를 위한 팀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프랑스) 원직복귀 의무제도를 도입한 국가로서 1981년 개정노동법에 의해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노동자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에 관한 산재담당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함
- (호주) 직업복귀법을 제정하여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제도와 과정을 명시 : 산재노동자에 대한 직업복귀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범칙금을 부과
- (캐나다)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온타리오주의 경우 사업장 안전과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를 제도화 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산재노동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임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소속 산재노동자 직장복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는 등 제도는 사업주에게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 직장복귀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벌칙조항 등 불이익 없음
- 소속 근로자의 원직복귀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당연의무에 해당

- 위 사항을 고려, 피규제자인 사업주의 순응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신설 대안은 사업주의 계획서를 통해 사업주의 애로사항을 파악, 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지원제도 연계를 통한 지원 제공
- 신설된 법령은 임의조항으로 재해 사업장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 미제출시 이에 따른 불이익 없음
- 따라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복직의지를 계획서에 작성·제출하는 형태의 본 제도는 행정상 집행 어려움이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요양 및 재활 중인 재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편성·조정 없이 집행 가능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편 방안연구(2018.11)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관련 의원입법 및 본회의 의결 (2021.4)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운영방안 연구용역 진행중(현재)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일 이전)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운영계획 마련
- (시행일 이후)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사업주 대상 제도 안내 홍보 진행

3. 종합결론

- 결론적으로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은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 의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업주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이 아님

- 취약계층인 산재노동자에 대하여 기본적 사회안전망 제공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 이행을 준비시키는 조치로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